

**반달섬 내 87호 문화공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 
민간위탁 보고의 건**



**안 산 시**

# 반달섬 내 87호 문화공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0-41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☐ 제안이유

- 반달섬 내 「87호 문화공원」 소유권 이전(한국수자원공사→안산시)에 따라 기부채납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자 함.

## ☐ 법적근거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
- 「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9조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7조제3호  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## ☐ 시설물현황

- 시 설 물 : AT-EV310 완속 충전기(7kW)
- 위 치 : 87호 문화공원(단원구 성곡동 888번지) 주차장
- 수 량 : 2대
- 재산가액 : 957,000원
- 취득경위 : 한국수자원공사 87호 문화공원 조성 및 시설 기부채납



위치도



현장사진

☐ **주요내용**

○ 반달섬 내 87호 문화공원 전기차 충전기 위탁운영

- 충전기 설비의 동작상태 상시 모니터링 및 고객센터 운영
- 충전과금 및 요금정산
- 충전기 점검 수행 및 유지보수
- 기타 충전기 운영·관리의 안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산시  
가 지정하는 사항 등

☐ **예산수반사항** : **【붙임 2】**

☐ **방침결정문** : **【붙임 3】**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### □ 「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9조

제9조(사업의 위탁)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·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·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·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# □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7조

제5조(민간위탁 사무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
9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3.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

**【붙임 2】**

**반달섬 내 87호 문화공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  
민간위탁 보고의 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  
(제3조제2항)

**1. 비용발생요인**
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발생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발생

※ 전기차 충전시설은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 방식 운영되며, 충전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요금(세출)은 이용자 사용요금(세입)으로 충당됨.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**4. 작성자: 환경녹지국 공원과장 김효식**